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 '24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 (법인)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① '24사업연도('24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24년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 § 2②)
- '26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5년 대비 2% · 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해당연도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		
'24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
기준비율	2% 이상	3% 이상

세정지원 배제

- 「근로기준법」 제43의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 '24사업연도(귀속) 법인세 ·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5. 11. 3. ~ 12. 1.)

- 흠택스 법인·개인 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지급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 ·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 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흠택스 접수는 11월3일부터 가능하며,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 1**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 § 2①]****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총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규모 기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②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③ (독립성 기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 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④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 주점업(일반유통주점업, 무도유통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통음식점업 및 관광유통음식점 제외)

참고 2

상시근로자 관련규정(조특령 § 23⁽¹⁰⁾)

■ 상시근로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간접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상시근로자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 ②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⑥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3

청년 등 상시근로자 관련규정(조특령 § 27①,②)

■ 청년 등 상시근로자

○ 청년, 장애인, 고령자가 해당

①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해당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가.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나. 「병역법」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③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2021.2.17. 신설)

*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청년 등 상시근로자 제외

○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위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 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다만,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참고 4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우대대상 및 내용

- (우대조건) 다음은 일자리창출기업 요건 적용 시 우대

연번	우대 대상	우대대상 조건
①	청년· 고령자·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령」 §27① 일부 준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15세 이상 ~ 34세 이하(군 복무기간 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②	청년창업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립 당시 대표자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20. 1. 1. 이후 설립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 (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②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③	강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중소기업벤처부 선정 참 괤찮은 강소기업 중 아래 요건 충족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체불, 산재 발생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
④	지방소재 사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특법」§2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사업장 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 소재
⑤	디지털 전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디지털전환촉진법」§24에 따른 산자부 선정 우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전환 우수 기업 및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를 포상

- (우대내용)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 기준비율 완화

연번	우대대상	우대 내용	증복적용
①	청년·고령자·장애인 고용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④, ⑤
②	청년창업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④, ⑤
③	(청년 일자리, 참 괤찮은) 강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명 → 2명) 계산	④, ⑤
④	지방소재 중소기업	상시근로자 수 (1명 → 1.5명) 계산	①, ②, ③ 중 1개, ⑤
⑤	디지털 전환 기업	기준비율($\Delta 0.5\%$)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백억원 : 1.5% - ~15백억원 : 2.5% 	①, ②, ③ 중 1개, ④

참고 5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①)

□ 2025년 상시근로자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1.2	50	50	50	50	51	51	52	52	52	52	52	52
수도권 외	25.9	25	25	25	25	25	27	27	27	27	26	26	26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0.7	20	20	20	20	21	21	21	21	21	21	21	21

□ 2026년 상시근로자

○ 2026년 채용·퇴사 계획

번호	일정	채용·퇴사	수도권/수도권 외	청년/청년 외	인원
①	2026.3월	채용	수도권 외	청년 외	1명
②	2026.5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③	2026.7월	퇴사	수도권	청년 외	1명
④	2026.9월	채용	수도권	청년	1명

○ 전체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수도권	52.5	52	52	52	52	53 ^②	53	52 ^③	52	53 ^④	53	53	53
수도권 외	26.8	26	26	27 ^①	27	27	27	27	27	27	27	27	27

○ 청년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명	22.0	21	21	21	21	22 ^②	22	22	22	23 ^④	23	23	23

■ 증가비율

- 수도권, 수도권 외, 청년 등을 구분하여 상시근로자 증감인원 계산

구 분	2025년	2026년	증 감
전체	계	77.1	79.3
	수도권	51.2	52.5
	수도권 외	25.9	26.8
청년 등	20.7	22.0	1.3

- 일반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5.1%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 외 증가인원 + 청년 등 증가인원) + (수도권 외 증가인원 \times 0.5)\} \div 2025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times 100$$

$$\{(1.3명 + 0.9명 + 1.3명) + (0.9명 \times 0.5)\} \div 77.1명 \times 100 = 5.12\%$$

- 청년창업·강소기업의 일자리창출비율은 6.2%

< 증가비율 계산방법 >

$$\{(수도권 증가인원 + 수도권 외 증가인원) \times 2 + (수도권 외 증가인원 \times 0.5)\} \div 2025년 전체 상시근로자 수 \times 100$$

$$\{(1.3명 + 0.9명) \times 2 + (0.9명 \times 0.5)\} \div 77.1명 \times 100 = 6.29\%$$

* 청년 등 근로자 가중치는 증가비율 계산 시 적용하며, 가중치를 적용하는 청년 등 근로자 증가인원은 상시근로자수 증가인원을 한도로 함

■ 요건기준 비율

- 일반, 청년창업, 강소기업 등 기준비율 요건 모두 충족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청년창업 등 기업	
		비율	충족여부	비율	충족여부
~500억 원	2%	5.1%	여	6.2%	여
500억 원~	3%		여		여

참고 6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②)

■ 합병법인

- 합병(수도권 소재)의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를 제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025년 상시근로자

- '25.5월 피합병법인의 상시근로자 40명을 승계한 경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60	60	60	60	100	100	100	120	120	120	120	110
피합병		40	40	40	40	-	-	-	-	-	-	-	-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 2026년 상시근로자

- '25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병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상시근로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증가비율

구 分	2025년 (①)	2026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충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7

일자리창출 비율 계산사례(③)

□ 분할법인

- 분할(수도권 소재)의 경우 분할 후 존속하는 사업부문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 2025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5.5월 분할된 법인의 분할 전 상시근로자 수를 분할존속 사업부문 60명, 분할신설 사업부문 40명으로 가정(청년 등 증가인원 없음)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100	100	100	100	60	60	60	80	80	80	80	70
분할신설		-	-	-	-	40	40	40	40	40	40	40	40
상시근로	67.5	60	60	60	60	60	60	60	80	80	80	80	70

□ 2026년 상시근로자(분할존속법인)

- '25년 분할신설 사업부문으로 이동한 상시근로자 40명 제외하여 계산

구 분	평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할존속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 증감비율

구 分	2025년 (①)	2026년 (②)	증 감	
			인 원(③)	비 율(③/①)
상시근로자 수	67.5명	70명	2.5	3.7%

□ 기준비율

수입금액	기준비율	일반 기업	
		비율	총족여부
~500억원	2%	3.7%	여
500억원~	3%		여

참고 8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참고사항

Q.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①·②·④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소수점은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예시) 1.46명 → 1.5명

Q.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 2번 ⑤ 최종 증가비율 계산은

▶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절사함에 유의

* 예시) ⑤ 최종 증가비율 5.12% → 5.1%

Q. 1~11월 중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 사업연도와 관계없이 2025년 대비 2026년 상시근로자 수로 계산

* 예시) 2025년 6월말 법인의 경우 2025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대비 2026년(1~12월) 연평균 상시근로자 수 증가비율로 계산

Q. 매월 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 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4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 생일이 지나서 만34세 이상이 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

* 예시) 2025.7.20일에 만 34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 등 외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당해 연도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5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 ▶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포함함. 근로계약 체결일이 매년 갱신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일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무상 어려움을 고려

Q.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직계비속)를 채용한 경우 임원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 ▶ 제외되지 않음.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용한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최대주주의 자녀 아님)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상시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 ▶ 포함됨.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제외사유(§조특령23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계약을 연장할 때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갱신계약일(재계약)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Q.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 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23⑩

Q. 무급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 ▶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 관련법령) 조특법§29의7①, 조특령§27, 23⑩

투자확대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국세청은 투자를 확대하는 성실한 기업을 응원합니다! ”



세정지원 대상

- '24사업연도(귀속) 수입금액이 1,500억 원 이하'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 (법인) 자산총액 2천억 원 이상 법인 · 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은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개인)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 ① '24사업연도('24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24년 귀속을 기준으로 판단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5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 § 2②)
- '26년 투자금액*을 '25년 대비 5%~20%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투자확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 조특법24, § 조특령21, § 조특칙12에 해당하는 투자금액

〈수입금액 규모별 투자금액 기준비율〉

'24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	500억 원 이상 ~ 1,500억 원 이하
일반기업	10% 이상	20% 이상
지역사업장 투자기업	5% 이상	15% 이상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사업장*에 투자하는 경우 기준비율을 5% 완화합니다
 - * 지역사업장 외 수도권 사업장에도 투자한 경우 지역투자 금액 비율이 80%이상이면 지역투자 기업으로 간주
- 단,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정지원 내용

- '24사업연도(귀속) 법인세 ·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대상선정에서 제외하는 세정지원을 제공합니다.

* 투자확대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투자확대 계획서 제출 방법 (제출기간 : '25. 11. 3. ~ 12. 1.)

- 흠텍스(법인·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 자급명세서 · 자료제출 · 공익 법인 → 과세자료 제출 → 소득 · 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 → 투자확대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화면에서 투자확대 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를 조회 및 출력 가능합니다.
- 흠텍스 접수는 11월3일부터 가능하며, 우편 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도 가능합니다.

참고 1

투자금액(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조특법 § 24)

■ 대상 자산

- 내국인*이 기계장치와 같은 설비자산(중고품 및 리스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조특령 §21①)

- ①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단, 토지와 건축물 등 아래의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조특령 §21② 및 조특칙 §12① [별표1])

<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업용 유형자산 >

구분	제외되는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
1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선박 및 항공기
3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벽돌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②연구·인력개발 시설,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근로자복지 증진시설 및 안전시설(§조특칙12②)

- ③운수업 등 특정업종 관련 별도 열거된 사업용 유형·무형 자산(§조특칙12③)

< 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중 별도 열거 자산 >

구 분	공제대상 자산
운수업	차량(자가용 제외) 및 운반구와 선박
건설업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등
어업	어업용 선박
도소매업, 물류산업	운반용 화물자동차, 무인반송차, 창고시설 등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건축물 및 승강기 등 부속설비
전문·종합휴양업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중소기업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등

- ④중소·중견기업이 최초 설정 등록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조특령21③③)

참고 2

중소기업 판단 관련규정(조특령 § 2①)

① (규모 기준) 업종별 연간 매출액 규모 기준 충족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해 구분)	규모 기준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매출액 1,500억원 이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매출액 80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매출액 60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매출액 400억원 이하

② (자산 기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

③ (독립성 기준)

- 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일 것
- ②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 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④ (업종 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소비성서비스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제외)
2. 주점업(일반유통주점업, 무도유통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통음식점업 및 관광유통음식점 제외)